

3. 중소 제조업 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-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 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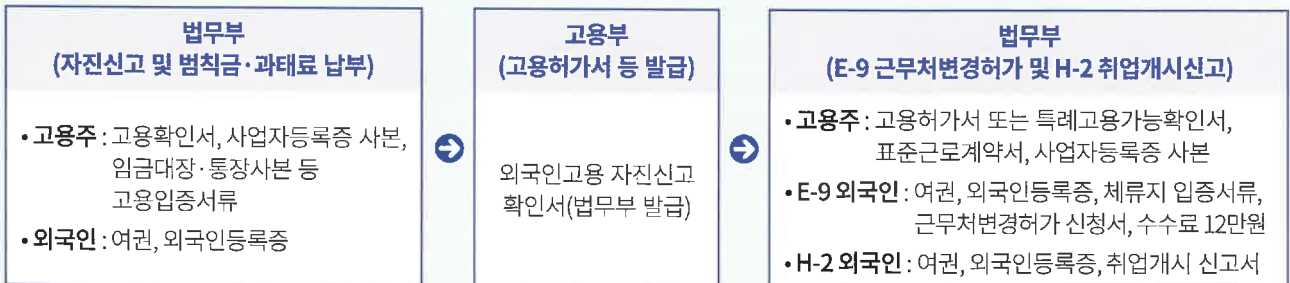
(고용주·외국인 범칙금 면제 및 외국인 입국금지 면제)

- **대상자** : 대책 시행일 현재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(중소 제조업에 한함) 및 그 외국인
 - **신고 기간 및 장소** : 2019. 12. 11. ~ 2020. 3. 31.(약 3개월간),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
 - **허용인원** : 내국인 피보험자 기준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명까지 허용
 - **제출서류** : 고용주, 외국인 동반 출석
 - **고용주** : 중소기업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고용확인서,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(내국인 고용인원 확인용), 임금대장·통장사본 등 3개월 이상 고용 입증서류
 - **외국인** : 여권, 자진출국신고서, 출국기한유예신청서
 - **혜택** : 피고용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(3개월) 체류허용
 - **비자신청**
 - **동포** : 단기방문(C-3-8), 방문취업(H-2), 재외동포(F-4) 사증발급
 - **비동포** :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
- ※ 고용주는 자신신고와 병행,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(고용제한 면제)



4. E-9, H-2 자격 불법취업 외국인

- **대상자** : 고용허가제 취업활동기간(최초 3년, 취업활동 기간연장 받은 경우 4년 10월)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 없이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(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, 어업, 서비스업) 및 그 외국인
- **신고 기간 및 장소** : 2019. 12. 11. ~ 2020. 3. 31.(약 3개월간), 현 사업장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
- **세부절차 및 제출서류** : 고용주, 외국인 동반 출석



• 범칙금 감경 등 혜택

- **E-9 고용주** : 근무처 변경허가 미필 외국인 고용에 대해 범칙금 30% 부과(법무부),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(고용부)
- **H-2 고용주** :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등 절차 미필에 대해 과태료 부과(고용부),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(고용부)
- **외국인** : E-9은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범칙금 30% 부과, H-2는 취업개시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(법무부)하고 현재 사업장 계속 근무 또는 다른 사업체로 구직 알선(고용부)

※ 2020. 2. 1. 이후 신규 불법체류가 된 외국인 및 2020. 4. 1.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범칙금 감경 없이 처분

※ 2020. 3. 1. 이후 단속된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미납 시 영구 입국 금지